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0나488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L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1.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가단22705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8,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3.부터 2022.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7. 1. 25. C을 상대로 “피고(C)는 원고(D)에게 4,325,746원 및 그 중 1,600,973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1,892,700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 583,335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7162042).

나. D는 2018. 7. 5.경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 위 이행권고결정상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2018. 8. 27.경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C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8.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F이 있다.

라. 피고와 C, F은 그 무렵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6.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전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는 2019. 6.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10. 8. 제1심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7. 항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C은 2021. 11. 15.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512호, 2021하면107512호로 파산을 선고받고, 원고가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원고는 2022. 1. 12. 이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에 의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고, 2022. 2. 18.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포함된 2022. 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2022.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인 C의 채권자인 A를 수계한 파산관재인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C이 원래는 상속포기의 의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인데 이를 진행한 법무사측에서 절차의 간소화 등을 이유로 C의 상속포기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형식상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지게 된 것이어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 이 법원의 동대문구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2022. 8. 1.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A 등 채무자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2016. 4. 또는 5.경 전부 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2016. 11. 16. N에 대한 물품대금 4,762,7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는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있기 이전부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018. 8. 12.경 805,0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들 중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172,857,142원 $[(\text{이 사건 아파트 가액 } 805,000,000\text{원} - \text{피담보채무액 } 200,000,000\text{원}) \times \text{C 상속분 } 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극재산은 C의 채무 원금만 계산하더라도 247,468,848원(=O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채무

187,340,850원 + N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762,709원 + A에 대한 양수금채무 4,077,008원 + J카드에 대한 채무 4,977,360원 + P은행에 대한 채무 12,427,788원 + G에 대한 채무 883,133원 + Q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33,000,000원) 상당이므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1)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9. 11. 28. 이 사건 아파트를 R, S에게 대금 86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위 R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동담보 감소의 범위

피고가 2019. 11. 28.경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86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00,000,000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치가 감소된 범위는 190,000,000원[=(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865,000,000원 - 피담보채무액 200,000,000원) × 2/7]으로 판단된다.

(2)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이 사건 아파트의 2018. 8. 12. 당시 가액이 805,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는 구체적 상속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865,0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인 805,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C에 대한 생전 증여 액수가 71,800,000원 상당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178,714,285원[=(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805,000,000원 + 특별수익 71,800,000원) × 2/7 - 71,800,000원]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속포기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T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T에게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히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

피고는 C의 채무관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C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C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인 이상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를 피고에게 이전한 C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또는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임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대한 부인의 효과로서 원고에게 구체적 상속분 미달분인 178,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를 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신한미, 판사 우인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 1필지 아파트 동[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유부분의 건물원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19.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 143827.4㎡1.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 34265.7㎡

대지권의종류: 1.2.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178093.1분의 53.40

(의 지분 중 7분의 2)

